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사유 외에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(안 제21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6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4. ~ 2018. 10. 24.)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52646(2018. 9. 19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